
Policy and Law Report _Vol.10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0.5 ~ 10.11) -

October 12,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 /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p>기획재정부는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 (산업부) ② 주요분야 4분기 물가 점검 방향(관계부처 합동) ③ 그린 중소·벤처기업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중기부·환경부)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등이 있음 	<p>2021-10-08</p>
<p>산업통상자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 제시 <p>*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 -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 <p>*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준)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p> <p>* 기준연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div>	<p>2021-10-08</p>

부처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C 상향을 위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 극대화 (전환·산업 부문)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 적용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 	
조달청	<p>• 공급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차단</p> <p>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p> <p>이번 대책은 공급 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중개자(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한 공공조달질서 훼손 행위를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무분별한 공급입찰 참여 방지방안 ('21.05.01시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물품 중 302개 세부품명에 대해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국방물자 11개 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추진 ②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③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시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제재 </div> <p>이번에 마련된 추가 대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동안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공급입찰을 사전에 납품예정인 물품을 제안하여 평가하는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대해 도입하기로 함 ②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할 예정 ③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되었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공급물품에도 확대하여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 등이 있음 	2021-10-05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7 시행예정) <p>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p> <p>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0.7 시행) <p>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됨</p> <p>이에 따라 금융회사, 체신관서 또는 보험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수금 보전금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1-10-07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6 시행예정) <p>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인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함</p> <p>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10-05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p> <p>「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② 既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p>※ 의견제시기간 : 10/8(금)~10/28(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안전과)로 제출</p>	2021-10-08
국토교통부	<p>•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p> <p>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 인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범위 확대 (안 제7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 ②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 (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범위를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2021-10-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 (안 제10조) - 연수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p> <p>④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의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p> <p>※ 의견제시기간 : 10/8(금)~11/1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p> <p>그런데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의 납부가 연기 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의 납부가 개시되어 지주회사 설립·전환하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p> <p>이에 기존의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항, 부칙 제1조 단서·제19조·제44조)</p>	2021-10-01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p> <p>현행법에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p> <p>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104조의11제5항)</p> <p>②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104조의12제1항)</p>	2021-10-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121조의23제10항)</p> <p>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p>	
환경노동위원회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p> <p>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p> <p>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9까지 신설 등)</p>	2021-10-0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은 링크된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참고 요망 [링크]		
국회사무처	10/1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9호 발간	
국회도서관	10/12(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75호 발간 -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	
	10/12(화)	「팩트북」 제90호 발간 - 가족의 다양성	
	10/12(화)	「현안, 외국에선?」 제21호 발간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10/14(목)	「국회 현안리포트」 - 미 송유관 사이버보안-연방 프로그램	
예산정책처	10/13(수)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발간 - 이전 국가R&D 사업평가 보고서와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성과관리 현황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입법조사처	10/12(화) 예정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10/13(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보고서 발간	
	10/15(금) 10:00	「전문가 간담회」 -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과 북일관계	온라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